

## 러시아의 화학적 거세 처벌 관련 규정 - 형법 개정안(N14-FZ, 2012.02.29)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I. 개요

현재 러시아에서 소아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성범죄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되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등록된 소아성애자의 범죄수가 25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7년간의 범죄수를 비교하면 30배나 증가하였다.

2010년 러시아에서 961건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384건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1,766건에 달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처벌 받은 자가 7,598명에 달하며, 이 중에 2,000명 이상이 형 집행 중이고, 약 500명이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위의 통계수치로 러시아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러시아 사법당국의 견해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 아동 성범죄의 일부분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히 사법당국이 파악한 통계치보다 더 많은 피해 사실이 존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이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기 만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미성년자에게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2009년 7월 개정 형법을 통해 성범죄자에게 부여되었던 가석방 조건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의 재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 국립연구기관 <V.P. Serbskovo 사회 및 법률 정신의학센터>에 따르면, 강제치료의 유무를 떠나 소아성애자의 재범행위는 형기 만료 후 2년 후부터 발생되었고, 이는 소아성애자에 대한 치료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미국 정신과 전문의도 소아성애자에게 행한 강제치료와 형기 만료 후 발생한 재범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연유로 아동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형

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학적 거세라는 법제 도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 내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11년 5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아동 성범자에게 화학적 거세라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형법개정 목적은 아동 성범죄의 예방이며,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에게 처벌되었던 집행유예와 형벌의 연기 규정이 폐지되었고, 가석방 및 감형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듯, 아동을 상대로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 규정은 종신형을 선고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 II. 개정 형법의 주요 내용

### 1. 구형 범위(형법 제57조)

개정 법률은 종전의 법률보다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구형되었던 종신형의 구형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신형의 구형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되었다.

### 2. 가중 조건(형법 제63조)

형법 제63조는 형벌의 가중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개정 법률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부모 또는 양육자(교육기관, 의료기관 포함)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 가중 조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 3. 14세 미만 성범죄자(형법 제73조)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을 받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처벌을 금지하였다.

### 4. 가석방 조건(형법 제79조)

개정 법률은 가석방 조건을 추가하였는데,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을 받으려면, 아동 성범죄자는 선고된 형량의 5분의 4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동 성범죄자의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5. 감형 기준(형법 제80조)

종전 법률은 형량의 4분의 3 이상을 복역해야 감형 기준(형의 변경)에 해당되었지만, 개정 법률은 감형기준(형의 변경)에 해당되는 형량을 5

분의 4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의 감형을 심리할 시, 법원은 동 성범죄자의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6. 형집행의 연기(형법 제82조)

동 법률은 형집행의 연기를 규정하였는데, 개정 법률은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에게 형집행 연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7. 강제 의료조치(형법 제97조)

동 법률은 강제 의료조치를 규정하였는데, 개정 법률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18세 이상의 성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는 자에게 법원은 강제 의료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 8. 재범(형법 제131조)

개정 법률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강간범이 이전에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를 갖고 있다면, 최대 종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추가되었다.

### Ⅲ.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벌

#### 1. 화학적 거세 처벌의 도입

2012년 2월 7일 러시아 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2년 2월 22일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2012년 2월 29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동 개정안에 서명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형법 개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에 대한 강제 의료조치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동 형법 개정안에는 직접적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전문용어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그 적용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즉, 형법에 규정된 강제 의료조치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이 실현되고 있다.

#### 2. 화학적 거세의 집행

현재 화학적 거세는 형법에 규정된 강제의료조치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집행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게 집행된다. 그 절차는 형법 제15장, 형사집행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강제 의료조치의 목적은 형법 제97조에 해당되는 자를 치료하고, 그의 정신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sup>1)</sup>

형법 제97조에 따라 강제 의료조치가 필요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는 아래와 같다.

- 책임능력이 없고 형법 특별편<sup>2)</sup>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자
- 범죄 행위 후 형의 처벌 및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착란을 일으킨 자
- 범죄행위를 한 책임능력이 있는 정신착란자
- 18세 이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책임능력이 있는 소아기호증에 걸린 자

상기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은 법원에 의해 강제 의료조치가 취해지며, 그 주요 집행 절차는 형사집행법에 따른다.

형사집행법 제18조 4항은 소아기호증에 걸린 자에게 처벌하는 강제의료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8세 이상의 재소자에게 형을 집행하는 기관<sup>3)</sup>은 형기 만료 6개월 전이나 가석방 및 감형 신청서의 접수, 형의 변경 신청 전에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는 재소자의 소아기호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재소자의 정신상태를 개선하고 재범방지 및 치료할 목적으로 그에 알

맞은 치료 조치를 정의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의 검사는 집행기관에 재소자의 자발적인 지원과 재소자의 동의에 따라 실시되며, 집행기관은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의 검사를 보장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강제 의료조치를 취한다. 재소자의 담당의사는 발의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료기간 중에 강제 의료조치의 변경과 중단에 대한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즉, 집행기관은 아동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형기의 만료 6개월 전 또는 감형 및 형의 변경 신청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며, 담당의사는 6개월 중에 1회 이상 치료 상태를 확인하여 연장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형사집행법은 강제 의료조치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에 관한 구체적인 약물 투여의 방법, 그에 따른 예산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제 집행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 형사처벌집행국에 따르면, 동 법률이 발효되고 나서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를 신청한 재소자는 없었다.

### 3. 화학적 거세의 연장, 변경, 중지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강제 의료조치의 연장, 변경, 중지는 강제 치료를 실현하는 기관, 강제



1) 형법 제98조.

2) 형법 특별편은 개인을 위협하는 범죄,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국가권력을 위협하는 범죄, 군대를 위협하는 범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록되어 있다.

3) 집행기관은 러시아 연방 형사처벌집행국이다.

의료조치를 집행하는 형사처벌집행국, 그 외의 강제 의료 조치를 감독하는 기관의 추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sup>4)</sup>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의해 실현된다.

#### IV. 결론

아동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 없이 아동 성범죄가 사회 전반에 큰 이슈가 되어 본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

른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이 부재해 앞으로 본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학적 거세의 도입으로 아동 성범죄율이 감소하였으나,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 철 환**

(러시아 현지 변호사)



4) 정신과 전문의 위원회의 구성은 강제 의료조치를 실현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다.